
第117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2月16日(水) 午後2時

場所 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技術審査擔當官所管業務計劃報告
 2. 建設局所管業務計劃報告
 3.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技術審査擔當官所管業務計劃報告 ... 2面
 2. 建設局所管業務計劃報告 ... 18面
 3.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37面
 4.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9面
-

(14時 59分 開議)

○委員長代理 崔榮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

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李仁根 擔當官을 비롯한 技術審査擔當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사 두 건으로서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두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技術審査擔當官所管業務計劃報告

(15時)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技術審査擔當官 所管 業務計劃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技術審査擔當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에 技術審査擔當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직원은 금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지 증진과 드높은 건설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品質試驗所長 兪五植, 技術審 査擔當官 審査總括
팀長 劉吉相, 技術支 援팀長 李成突, 土木審査팀長 朴甲萬,
建築審査팀長 金永根, 設備審査팀長 尹錫悌, 造景審査팀長 裴
虎永, 品質試驗所 總務課長 吳日奎, 品質指導課長 金英桓, 材
料試驗課長 朴鐘斗, 化學試驗課長 李達玉, 計量器檢定課長 羅
炳九)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

(報告)

技術審査擔當官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技術審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技術審査擔當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
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在天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在天 委員;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건의
내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
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명 이내로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인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분명히 설계내용에 대한 기술심의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심의위원회 걱정된 위원한테 심의내용이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전문가가 아닌 위원한테 배부되어서 기술심의를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입증을 한 건 한 건 다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을 수없이 많이 했던 것 이것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기술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원활하게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위원들이 적어도 4~5년씩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10년 이상 하는 분들도 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10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최장기간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년 정도 있어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한 6년 정도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6~7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한 내용이, 특히 주요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졌던 이런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술심의관쪽에서 그 심의내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 줘서 자료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다시 주요공사 심의내용을 그 위원한테 맡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동안에 심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었다, 설계변경내용이 잦았다든가 또는 부적격한 심의를 해 가지고 建設安全管理本部측에 의뢰해 온 부서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자료로 충분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심의관쪽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있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鄭在天 委員; 기술심의가 적정성있게 적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별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위원한테 우선 심의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

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특히 커다란 설계변경이 있는 사업에 참여한 그런 위원들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다음에 법령개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정착을 위한 실태분석을 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도 지원을 하고 건설안전관리기술법이라든가 안전관리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적어도 지금 자치단체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법령은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6개월 내지는 1년까지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실태를 즉시 즉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그 사례를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각 부서에도 먼저 보내 주세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1년 지난 뒤에 서울시조례가 따라가서는 시행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조치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조정시스템 개선지원 문제 여기에서 물가변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 감사 때도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특히 공사 시행부서인 建設安全管理本部측에 이 문제가 합당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변동금액 조정 잘못으로 감사원 지적이라든가 서울시 자체 감사를 수없이 받아 왔고, 변동금액조정을 지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적용해서 물가변동

산정을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억원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전담부서 建設安全管理本部면 본부에 물가변동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심의관쪽에 전문가가 먼저 양성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전문가는 없잖아요?○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합니다.

즉, 저희 팀에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하는 업무를 그래도 다른 어느 부서보다는 숙달된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서에 그러한 팀을 우선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1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스크린을 하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기술발표회를 갖고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물가변동 적용을 할 때 건별로 올라오면 그것을 그때 그때 심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鄭在天 委員; 심의는 아니고 점검을?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점검은 시기별로 할 생각입니다.

○鄭在天 委員; 그러니까 그 팀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본부별로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팀에서 전 부 개별 계약건별로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술심의관 쪽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도 그러한 팀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 준비가 먼저 완료되고 발주처에 지원이 나가야지 여기 준비는 미비한데 建設安全管理本部에 전담팀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먼저 기술심의관쪽에 팀을 구성을 하고 그 역량 가지고 발주처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체계가…….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지원팀도 중요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의무는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계약금액의 적정성이라든가 부적정성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부적격 적용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서에는 설계금액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금액까지?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심의할 때는 주로 기본설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鄭在天 委員; 기술적 검토만 하지 말고 경제적 분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성에 대한 분석도 곁들이는 것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인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당설계변경

사례가 나오고 물가 지수적용이라든가 물가변동 적용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변경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최초의 기술적 검토할 때 심의할 당시에 경제성 검토까지 해 달라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경제성 검토는 물론, 저희가 포함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鄭在天 委員; 경제성 검토가 바로 이 설계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鄭在天 委員; 물론, 공사내용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사비의 적정성 있는 산출을 해 냈는지 안했는지 이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제성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계약할 때 쌍방간에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관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변경이 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변경할 때 발주처에 전담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는데 계약 당시에도 계약 이전에 기술심의할 때도 이 문제 검토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런데 내역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전문기관이 저희 조달청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전부 내역 원가산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절차면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在天 委員;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법적으로 가는 것인지, 설계가까지 기술 심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건설기술자들의 기술적 능력은 지금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외국에서 나와 있는 감리회사, 지금 가양대교 같은 데 외국 RPT社가 영국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책임단장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기술능력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기술적 문제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기네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사고방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 건설현장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대충 대충 적당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기술자들은 적당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원칙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외국 책임감리의 3배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진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것이 사고가 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마음 하

나가 제대로 정리 안 되어 있어서 3배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외국 책임감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강화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술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높은 수준의 기술력 가지고 외국에 빼앗기고 있는 이런 재정을 감안해서 정신무장의 교육지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겠습니다.

○鄭在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鄭在天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奇德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奇德 委員; 존경하는 鄭在天 委員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약간 세분화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입니다.

상계동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심의를 담당관계서 했습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자세히 기억은 없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建設交通部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래 전 일로 알고 있는데요.

○金奇德 委員; 그때 담당했던 간부공무원들도 계십니까?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저희가 기억하기 로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97년 이전에는 建設交通部에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금년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6건 정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지금 특히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투명성 확보하고,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염려가 되고 전문성이나 견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요즘에 서울시 정책에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알고 있습니다.

○金奇德 委員; 특히,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설의 기준이 지금 태우는 것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송파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올해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회는 서울시 광역쓰레기 처리문제가 사실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마포 같은 경우 자원회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環境管理室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보류를 하자, 제대로 한 제도 속에서 하자, 또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확정된 다음에 체계화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득이 마포는 강행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도 해당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技術審査擔當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니 정말 어느 심의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처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金奇德 委員; 그래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일반 다른 시설물처럼 일반화되게 할 것인지, 정말 이것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해외를 견학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심의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착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를 사업을 하기로 하고 충분히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심의를 할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혹은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확정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업체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적격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적격심의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잡아 놓은 사업은 금년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획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적격심의회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奇德 委員; 물론,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반기에 적격심의회 할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金奇德 委員;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책인데 그 구성은 그냥 여기에 보고된 대로 학계, 연구소, 산업계, 시민단체, 또 시의원은 지역구 사업 심의시 관계전문가 자격으로 초빙해서 다른 심의하는 것처럼 할 것이냐,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또 현대식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할 때하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통과될 때 자원회수시설건에 대해서 한 건이 통과가 되었어요, 국고지원도 있었고.

거기에 뭐를 달았느냐 하면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임, 최신시설이라는 것이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어떤 기준이라고 정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심의해 줄 적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론적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외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심의단계에 오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설계기준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루어져야 될 일은 제시한 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진시찰라든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기술심의위원들이 하는 업무의 범위, 그날 심의하는 범위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세운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한 지식이나 식견을 갖고 있어야만 기술심의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네, 그렇습니다.

○金奇德 委員; 바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쪽의 충분한 해외시찰이나 우리나라에 잘 된 곳이 많이 없으니까 보고 와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우선은 저희가 그 동안에 몇 건의 일괄입찰 적격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혹은 저희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격심의를 한 실적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인력풀에서 저희가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에 들어간 분은 누가 보더라도 자원회수시설에,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심의를 할 만하다 그런 분

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최신의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 전에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 우선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서 선진시찰이라든가 혹은 그 분야 권위자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어쨌든 심의위원들에게 중요한 정책사안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들로 발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시 의원은 지역구사업 심의시에 관계전문가를 초빙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도 우리 서울시 의원들도 꼭 지역구 사업이 아닌 이런 심의를 할 때도 꼭 참여를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제도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審査擔當官 李仁根; 알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金奇德 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어떤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각종 기술심의, 그리고 품질시험,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향상 부분, 품질관리 부분 등 모든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만큼 올해 2000년대를 맞이한 서울시의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우리 技術審査擔當官, 그리고 品質試驗所의 임무와 사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알찬 집행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이 技術審査擔當官, 그리고 品質試驗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동안 각종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의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李仁根 技術審査擔當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技術審査擔當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建設局 공무원은 정회중에 회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6分 會議中止)

(15時 56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崔榮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張錫孝 局長을 비롯한 建設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庚辰年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建設局 소관의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張錫孝 局長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建設局所管業務計劃報告

(15時 57分)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建設局 所管業務計劃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張錫孝 建設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번 임시회 이전에 주요 업무보고서에 대한 것을 배포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建設局長 張錫孝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建設局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建設行政課長 權宗洙, 道路運 營課長 韓在浩, 下水計劃課長 李憲洙, 治水課長 李益柱, 中浪下水處理事業所長 宋雄基, 炭川下水處理事業所長 李運炯, 加陽下水處理事業所長 朴鍾大, 蘭芝下水處理事業所長 金京煥, 中浪下水處理事業所 管理課長 孫炳淳, 中浪下水處理事業所 水處理課長 李在明, 中浪下水處理事業所 污泥處理課長 金振九, 炭川下水處理事業所 管理課長 趙基元, 炭川下水處理事業所 水處理課長 黃善溢, 加陽下水處理事業所 管理課長 曹德鉉, 加陽下水處理事業所 水處理課長 金東烈, 蘭芝下水處理事業所 管理課長 李聖旭, 蘭芝下水處理事業所 污泥處理課長 裴賢喆)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建設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庚辰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建設위원회에서 우리 建設局 금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

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建設局의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을 비롯한 建設局 직원 모두도 금년 한 해 동안 建設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參照)

建設局 2000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報告)

建設局 主要懸案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와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彬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元彬 委員; 任元彬 委員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실까요? 외환은행 본점 앞 도로부지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1심의 재결시 승소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서울시가 졌습니다.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任元彬 委員; 재결심의 때.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외환은행에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任元彬 委員; 아니, 사건명이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가 98구 26237 이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 받아주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쟁점사항 2항을 보게 되면 원고가 조성하여 건물준공과 함께 사용하게 된 도로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던 말입니다. 私道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저희는 私道로 이것을 보고 도로로 평가를 했고, 외환은행에서는 이것은 私道가 아니고 서울시가 도로로 포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任元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私道가 몇 년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고 계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이것이 87년도에 외환은행 건물이 준공과 함께 이 도로도 포장이 되어서 사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81년도 1월에 외환은행 사옥이 준공이 될 때 그때 이것도 저희 예측에는 도로로 포장이 되어서 같이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任元彬 委員; 제 얘기는 우리 市가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패소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토지수용료를 내줄 때에 97년 3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의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피고가 중구청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같이 피고가 된 것입니다.

○任元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항소에 조치완료했다는데, 물론 재판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항소의 취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市가 동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함께 갔다면 97년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任元彬 委員; 핵심이 지금 재판부하고 서울시하고 주장 사실이 상반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엄연히 私道로 느낌이 드는데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市가 소송을 수행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항소는 중구청장이 했지만 저희가 여기 조치계획에 있는 것처럼 저희 市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선임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私道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저희가 市 차원에서 이 당시에 시공회사 이런 데 자료를 수합을 해서, 중구청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중구청을 도와서 소송을 이

기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할 사항 같은데요. 하여튼 많이 市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아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중구청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任元彬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서울시가 우리 토지수용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중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任元彬 委員;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영등포시장 로터리 예산이 개·보수가 한 25억이 나와 있는데, 또 130개 점포 인수받아서 나머지 80 몇 개 점포는 2월 17일인가 인수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29억 예산을 들어서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너무 세금을 낭비하지 않나, 그 29억을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 묻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보수 해 봐야 아무 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1차 1공구를 해서 2차 2공구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았던 회사가 IMF로 인해서 결국은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를 할 경우 새로운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회사가 서울시 상대로 아마 보증금을 낸 돈이 있었다고, 그게 1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패소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개·보수할 것이 아니라 바로 2공구 공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개·보수가 함께 병행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등포시장 로터리 한번 가 보셨어요? 지하도 없어요. 지하

도 따로, 역전 앞부터 들어가는 지하도 따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다고.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더군다나 지금 5호선까지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5호선까지 죽 연결 다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이 낸 세금 알뜰히 쓰는 것 아닙니까? 개·보수 한 후에 2공구 또 들어가면 보수 또 해야 된다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建設行政課長 權宗洙; 네, 알겠습니다. 建設行政課長 權宗洙입니다.

현재 지하도 상가의 경우는 결국 보행자의 보행소통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고,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로 설치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현재 지금 개·보수하는 부분은 이왕에 설치된 상가에 대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서 개·보수가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등 담당은 누구시죠? 영등포동 5가, 6가, 7가, 지금 가로등이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25개구에서 공동변소 있는 것은 영등포밖에 없을 거예요. 5가, 6가, 7가 그 동네가 바로 그 동네거든요. 택시가 지나가다가 5가, 6가에

세워 가지고 거기서 소피를 본다고. 그 정도로 가로등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이다 이 말이에요.

가로등 lux가 몇 lux입니까?

○道路運營課長 韓在浩; 道路運營課長 韓在浩입니다.

가로등 lux는 현재 간선도로의 경우 새로 설치하는 것은 30lux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15lux로 설치를 했습니다.

○任元彬 委員; 5가, 6가를 현장을 한번 보셔서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道路運營課長 韓在浩; 영등포로는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조도측정을 한 번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任元彬 委員;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任元彬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元甲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車元甲 委員; 車元甲 委員입니다.

도로보상 문제 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패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린 이대공원과 천호대교 도로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패소를 했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車元甲 委員;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계산해서 얼마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이 77년도에 도로개설하면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에서 천호대교로 넘어가면 꼭대기 부분이 있습니다. 위커힐쪽으로 가는 육교 있고 그 밑입니다.

그래서 대로상에 있는 땅인데 그 당시 제가 죄송합니다만

평당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77년도 개설할 때 서울시가 보상해 주려고 한 금액이 싸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이것을 공탁도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상을 안 해 주고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급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6억 4,900만원을 주고요.

○車元甲 委員;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단가를 얼마로 계산을 해서 얼마를 보상했는지 우리 建設局長께서는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것을 문서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6억 4,900만원을 보상을 하라 하고 판결이 났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車元甲 委員; 그 6억 4,900만원 보상금액이 단가를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그 보상금액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서는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포기를 하였다고 밝혀져 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이 6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보상을 안해 주고 사유지를 그냥 썼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용료입니다.

○車元甲 委員; 사용료가 이 금액이 타당합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한 금액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절차도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아까 77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의 소송기간은 근래입니까? 77년도의 얘기입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이것은 근래입니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가격도 모르고 임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네?

○車元甲 委員;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가격을 지금 建設局長께서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車元甲 委員; 소송하신 원고하고 서울시에서 지급하겠다는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생겼습니까? 서울시에서 패소당했다는 것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市가 남의 땅을 그 동안 그냥 보상을 안하고 쓰고 있으니 사용료에 대한 것은 市가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항소를 해도 승소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車元甲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줘야 되겠죠. 준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틀림없는 기본방침인데 보상금액 가지고 서로 차이가 생겨서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아닙니다.

○車元甲 委員; 그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당초 77년도에는 토지비용 때문에 이 사

람이 협의를 안했다가 서울시가 협의보상도 안하고 그냥 쓰니까 지금 와서는 사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소송…….

○車元甲 委員;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서울시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응해 주지 않았냐?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車元甲 委員; 보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땅 주인께서는 무슨 불만이 있으니까 응해 주지 않은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張錫孝; 토지가가 적다는 얘기죠.

○車元甲 委員;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서울시에서 측정한 토지가하고 원고측에서 보상금액 바라는 희망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료로 해서, 제가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車元甲 委員; 여기 보고서만 만들어 놓고 보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서를 파악하고 보고를 해야죠.

○建設局長 張錫孝; 죄송합니다.

○車元甲 委員;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패소했다 그러면 대서울시에서 개인 한 사람에게 패소했다는 것이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죠.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금액 얼마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려고 했고 원고측에서는 얼마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어온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건 것은 아니고요.

○車元甲 委員; 하여튼 보상금을 안 주니까 건 것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왜 괜히 소송을 했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보상금을 안 주고 해결이 안 되니까 소송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측하고 원고측하고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 차이.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것 때문에 보상이 안 되었죠.

○車元甲 委員;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우리 서울시측에서는 얼마 주려고 그랬고 그쪽에서는 얼마를 바라고 있었고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지금 그냥 서울시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라고 손드는 것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근사치에 있다면 포기를 하겠지만 그 금액도 안 나오고 그냥 포기를 해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보고 올린 것처럼 77년도에 저희가 평가한 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여기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그러면 주시되 저에게는 이분이 언제 소송을 냈는지, 소송을 낼 때 그때 기준가를 정해서 해야지 77년도에 계산한 기준가를 한다라고 했으면 응하지를 않죠.

지금 77년도 얘기를 국장께서 하시기 때문에 77년도 기준한 금액 가지고 서로가 말하자면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지금의 금액 가지고 이루어졌느냐…….

○建設局長 張錫孝; 이 손해 6억 4,9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사용료입니다.

○車元甲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억 4,900만원은 지금 현재 판결 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보상금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고자 하는 보상금은

얼마였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建設局長 張錫孝;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것이 보상금이 아니고 그 동안 사용했던 사용료이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또 절차를 밟아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車元甲 委員; 다시 말씀드리어서 6억 4,9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를 달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라고 지금 판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측에서는 얼마를 주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료는 얼마를 바라고 원고측에서는 지금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을 요구했는지 이 금액의 이상을 요구했는지 판결문이…….

○建設局長 張錫孝; 사용료는 사용료 요구를 이 사람이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것을 사용료에 대한 것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라는 것은…….

○車元甲 委員;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준다면 얼마를 주려고 생각했느냐, 생각도 전혀 안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얼마라고는 없고 재판에서 이것이 판결한 액만큼 저희는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車元甲 委員; 아니죠, 국장님, 소송이라는 것이 재판을 할 때 원고측에서 사용료를 얼마를 달라 하는 것이 얘기가 될 것이고, 서울시측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판결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6억 4,900만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판결에서 6억 4,900만원 주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委員長代理 崔榮壽; 建設局長님, 우리 소송대리인 있잖아요? 建設行政課長인가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서울시측에서는 얼마를 주겠다, 우리는 얼마로 하련다 이런 얘기도 안하고 그냥 판결에 응했습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되고 의견도 제시하고 서울시측에서는 의견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 사람들 땅을 서울시가 결국에 보상을 안하고 사유지를 도로를 사용을 죽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 토지주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왜 남의 땅을 그냥 쓰느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내나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맞다, 그러니까 사용료 명목으로, 이 사용료라는 것도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니까 지금부터 과거까지 5년간의 사용료만 6억 4,900만원을 서울시는 원고한테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주고…….

○委員長代理 崔榮壽; 법원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러니까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산출액이냐고.

○建設局長 張錫孝; 법원에서 이 사람들도 감정하는 사람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러니까 그 안에 과정은 어떤든 간에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 아니냐고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車元甲 委員; 본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서울시측에서는 그 동안의 사용임대료를 얼마를 주려고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론 재판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측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

○建設局長 張錫孝; 우리가 얼마를 준다고 얘기를 안했죠. 그냥 사용을…….

○車元甲 委員; 아니, 사용을 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도 안합니까? 계산도 안했어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車元甲 委員; 남의 땅을 쓰고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善會 委員;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측에서 외환은행 땅을…….

○委員長代理 崔榮壽; 외환은행 땅이 아니에요.

○車元甲 委員;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崔榮壽; 외환은행 땅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서 천호대교 가는 도로예요. 局長님이나 建設行政課長, 지금 까지 일어난 일련의 소송일지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車元甲 幹事님에게 서면으로 정확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정확히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는 나중에 속기록에 삽입을 해 주시고요.

○建設局長 張錫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車元甲 委員;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하여튼 그것을…….

○建設局長 張錫孝;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소송일지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되었
잡아요.

○車元甲 委員; 우리 建設局長님이 납득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대리인이 되었든 누구한테 물어봐 가지
고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상세히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車元甲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奇德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奇德 委員;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월드컵 지역출신 金奇德 委員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하천정비에 예산이 엄청난 200억이 들
어가는데 하천을 정비해서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서 무성한
갈대숲과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꾸어 환경친화적 친수공간
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친
수 자연형 하천을.

춘원 이광수가 소나기나 흙에서 소설을 쓴 것처럼 젊은 남
녀가 로맨스를 숨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갈대가 우거진 하
천,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저희가 그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어쨌든 이 서울의 삭막한 도시에 서울시 예산
200억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는만큼 최소한 소
설에서 나오는 것만은 안 되어도 그곳에서 젊은 남녀가 사람
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애정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보고서 5쪽의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합정로 확장 추진현황에서 그렇게 제가 의회 열릴 때마다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관계로 민원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기이 의회에서 바로 신년초에 보상을 집행하겠다는다고 해서 그곳의 세입자나 토지주는 지금 보상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예산형편상 예산이 100억 남은 것 358억만 집행되는 관계로 어차피 그 곳을 떠나야 될 사람들은 지금 보상가격이 높고 적음을 떠나서 빨리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시위가 연일 마포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이것을 인지한지라 지금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보상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市長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월드컵 주변도로 개설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합정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합정로가 너무 예산이적게 되는 바람에 도로확장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建設局長께서는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빨리 진행시키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市長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간부께서는 추경에서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너무 늦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市長도 같은 견해를 가진 바가 있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金奇德 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보상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와 타 도로사업 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추경시에 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조치계획에 보면.

그런데 타 도로사업 예산에서 제가 설에 의하면 마포구청 建設交通局長, 그 다음에 서울시 豫算課長, 그 다음에 建設局長 모두 다 모여서 예비비는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또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다른 도로사업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쓰는 방안을 구수회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建設局長 張錫孝; 네.

○金奇德 委員; 그러면 구수회의시에 거론되었던 타 도로사업 예산 어디 어디 것을 거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에서 한 50억 정도, 그 다음에 증산지하차도에서부터 성산1교까지의 거기에서 한 15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가양대교에서 100억, 또 북부간선도로 연장도로가 있습니다.

태릉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100억 정도로 해서 400억을 가지고 우선 충당을 하고, 그리고 추경 때 꼭 이것을 쓰는 조건도 추경 때 이것을 바로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한번 합정으로 사업에 쓰자 이런 식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무자간 의견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도로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합정으로 돌린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이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러니까 局長께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구만요?

○建設局長 張錫孝; 네.

○金奇德 委員; 서울市長께 이 건에 대해서 약 400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建設局長 張錫孝; 그것은 企劃豫算室長이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항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 드리고, 그 후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金奇德 委員; 그렇게 집행부에서 불과 예산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기능을 하고 있는 예산편성심의를 하고 있는, 또 승인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기능을 전혀 무시한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왜냐 하면 과거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월드컵 주변도로만 큼은 예산을 돌려서 다른 데 쓰고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안사업으로서 너무 긴박한 사안이고 월드컵대회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된다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된 예산은 1전짜리도 거의 손 안 댄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안 된 이쯤의 상황에서 이것을 당장 합정로가 급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승인을 해 준 이것을 건드려서 그쪽으로 유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관련조례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관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목·관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가 없고, 또 쓴다 하더라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 충분히 다른 기금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600억이 되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전용을 시켜서 이 사업을 빨리 합정으로 확장에 차질이 없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建設局長께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市長께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오늘 오간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좌우지간 합정으로 확장에 대한 것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奇德 委員; 하여튼 局長께서 직접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월드컵 주변도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金奇德 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 봅니다.

오늘 건설국 2000년 주요업무보고와 주요현안업무보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그러한 업무임에 틀림없다고 사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 좀더 체계적이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서 즉흥적이지 않고 항상 계획

된 상황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16時 49分)

○委員長代理 崔榮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제출자인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建設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이어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육교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민간의 육교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사용의 경우도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장 2년의 기간내에서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

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勇勳; 專門委員 朴勇勳입니다.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本 改正條例案은 조금 전 정회하는 도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陸橋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4.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52分)

○委員長代理 崔榮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제출자인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建設局長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張錫孝;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改正되는 條例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6월 施設物の安全管理에 관한特別法등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인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각각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기점검의 주기를 분기별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정밀점검 중 교량의 점검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에서 다른 시설물 등의 경우와 같이 2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둘째,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상태 및 노후화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일 이전 6월 이내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市 條例가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공공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에 반하여 施設物의安全管理에 관한特別法은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종합병원·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 등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완화대상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本 改正條例案은 상위법규인 施設物의安全管理에 관한特別法の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勇勳; 專門委員 朴勇勳입니다.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榮壽;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本 改正條例案 역시 정회중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道路等主要施設物管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代理 崔榮壽;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張錫孝 建設局長을 비롯한 建設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市政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57分 散會)

○出席委員

閔鍊植	崔榮壽	車元甲	金奇德
金魯珍	金善會	金俊明	朴洙桓
李康玉	任東淳	任元彬	鄭在天

咸泰浩 洪淳喆

○專門委員

朴勇勳

○出席公務員

建設局

局長 張錫孝

建設行政課長 權宗洙

道路運營課長 韓在浩

技術審查擔當官 李仁根